

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사무의 관할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멸실인정’을 받은 자동차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차량 방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므로,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압류실익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5조)

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해제)서를 첨부하는 절차를 생략(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 ~ 5. .) 예정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단서 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⑩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제6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 ----- ----- ----- ----- ----- · <u>특별자치시장 및 그 위임</u> -----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u>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u>	2. ----- ----- ----- ----- ----- ----- ----- -- <u>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u>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 ⑥
(생 략)
<신 설>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

⑩ -----

-----, ----- 다음 각호의

<u>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u> <u>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u> <u>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u>-----</u> <u>-----.</u> <u>1.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u> <u>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u> <u>는 경우</u> <u>2. 제6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u> <u>을 신청하는 경우</u>
---	--